#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97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이종욱·김종양·이종배

윤한홍 · 송언석 · 서천호

송석준 • 최은석 • 구자근

윤영석·박대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한다, 이하 '신항'이라고 한다)은 2019년부터 경남에 소재한진해신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 이하 같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신항의 개발을 추진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 진해가 소재한 지역명 '경남'이 누락 돼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됨.

2024년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8년 뒤인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중 24개 선석(전체의 5 1%)은 경남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행정구역상 부산에 위치할 계획임.

이후에는 진해신항에만 선석 건립 작업이 진행돼 2040년에는 신항

의 총 59개 선석중 36개 선석(61%)이 경남에서 운영되고, 부산에는 추가 선석 건립계획이 없어 2032년과 동일한 23개(39%) 선석만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결국 2032년에는 선석 기준으로도 진해신항이 부산을 추월하고, 204 0년에는 신항 선석의 약 2/3가 진해신항에 위치 할 계획임.

신항 배후단지의 대부분(86.3%)도 진해신항 인근에 있고, 2024년 12월에는 진해 소재 그린벨트 해제로 추가적인 배후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신항은 2029년 3선석이 우선 개장되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임.

그런데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지만, 신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명칭에는 여전히 '경남'지명이 누락된 채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임.

항만법 시행령 별표 1(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에서 부산항 수상구역의 시작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에서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설립하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같이 2개 이상의 항만 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항만(경인항: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화성시·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또는 항만의 명칭에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항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에도 가칭 '경남부산항만공사'와 같이 신항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 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주요내용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공사의 명칭을 항만 및 항만시설 이용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토록 개선하고(안 제9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항만공사의 이름에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명칭을 모두 포함시키는 입법을 계기로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여 항만이 소재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공사의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공사의 명칭은 관련 항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위치 및 공사의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안 혂 행 개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제9조(공사의 명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략) <신 설> ② 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 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연 접되어 있는 경우, 공사의 명칭 은 관련 항만 또는 특별시ㆍ광 역시 · 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 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 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설> 항만의 위치 및 공사의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 역시 · 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 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 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